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국토부 김도형 꾸물댈 게 뭐 있냐? 당장 처리해라
내용 은평 경찰서 이주철이 친절하게

1. 2021년 8월부터 은평경찰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 4 위반하고 있고
2. 청사내에 불법건축물 만들어 완제품 팔고 있다고

내부 고발해주었는데, 뭘 관계법령 확인 검토 운운 처리기간 연장하고 자빠진 거냐?
 당장 은평경찰서에 시정명령 내리면 끝나는 걸.

[형법] 제122조, 제151조로 고발 당하고 싶냐?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첨부 파일

기피부서 정보

기피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기피유형 공무원 비리
기피자 정보 이연주, 최지수, 김문수
기피사유 공무원 비리 은폐 비호하는 쌍것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